
2017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2017
RETIREMENT
PENSION PLAN

2017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생각
유안타증권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우편물을 E-mail로 받아보세요

우편통보지를 E-mail로 변경하는 방법

1. 온라인에서 변경

• 개인형IRP

홈페이지(www.myasset.com) (뱅킹/계좌/대출)개인정보조회/변경 및 통보지관리)에서 E-mail로 변경

• DC플랜 가입자

홈페이지(www.myasset.com) 에서 E-mail 주소 등록 후 퇴직연금 홈페이지(My퇴직연금)기본정보) 가입자정보조회/변경)에서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2. 유선변경 (고객지원센터☎1588-2600) 및 영업점

가입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E-mail주소 등록 및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가능

Contents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순서

01	2017년 개정 내용	4
02	퇴직연금제도 개요	5
03	중도인출, 지연이자	9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3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14
06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17
07	계약이전 절차	22
08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23
09	수급권의 보호	25
10	노후 설계의 중요성	25
11	투자의 기본원칙	26

101

2017년 개정내용

개인형IRP 가입대상 확대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IRP가입대상 확대됨 (2017.07.26~)

과거 퇴직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개인형IRP 가입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이후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에 개인부담금을 납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내용 변경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불명확했던 계약서 내용이 개선되어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변경일 2016.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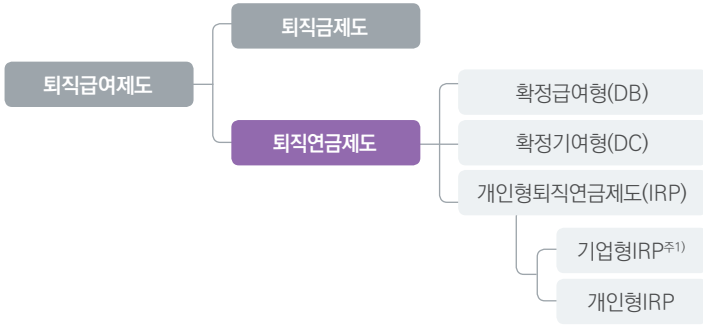
구분	개정내용
계약이전 처리 기일 등 명시	<p>(처리기일) 이전 신청후 5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5 영업일 초과시 지연보상금 지급</p> <p>*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보며, 적립금 매각(펀드 환매 등)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됨.</p> <p>(지연보상금) 대상금액에 근퇴법상 정한 이자율을 적용(14일 이내 10%, 15일 초과 20%)</p>
자산관리계약서에 퇴직급여 지급처리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p>(처리기일)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급여지급 통지를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3 영업일 초과시 지연보상금 지급</p> <p>* 적립금 매각(펀드 환매 등)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됨.</p> <p>(지연보상금) 대상금액에 근퇴법상 정한 이자율을 적용 (14일 이내 10%. 15일 초과 20%)</p>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시 사업자의 임의적 상품선정 금지	<p>예금, RP 등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동일한 운용방법이 없으며 대기성자금 등으로 전환</p>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p>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손실보상 방법은 사업자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음</p>

| 0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2005.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주1) 기업형IRP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



사용자가 계속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10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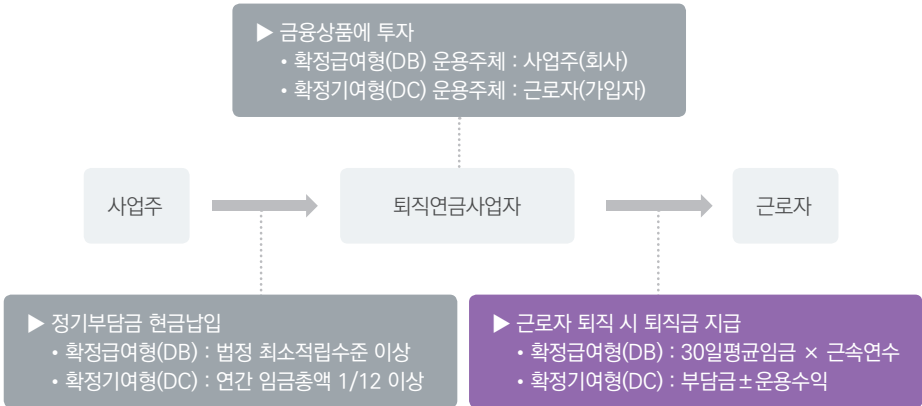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산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사용자(기업)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금의 수준 변동•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의 퇴직시 부담금(원금) 및 운용손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법정사유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 개인형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요건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세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의 기간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용 프로세스를 통한 제도 유형별 특징 및 급여액



Q.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시 사용자(회사)는 어느 정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요?

A. 사용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주1)}은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적립비율(2015년 까지: 70%, 2016~2018년: 80%,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보다 낮은 수준 적용가능)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재정검증” 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사용자(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1) •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법정 최소적립비율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 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 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10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 법정 최소적립비율

사업연도	2014~2015	2016~2018	2019년 이후~
법정 최소적립비율	70%	80%	고용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연차에 따라 위의 법정최소적립비율보다 작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 일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대상이나,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호]

Q. 재정건전성 검증결과 적립초과 일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적립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결과	조치사항
기준책임준비금 × 150% < 보유적립금	사용자의 적립금 반환 요구시 반환가능
기준책임준비금 × 100% < 보유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50%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103

중도인출, 지연이자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IRP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의 100%
담보제공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50%

※당사는 현재 담보제공 가능 상품 없음

중도인출 · 담보대출의 의의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하고,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연속성 및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및 제출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무주택 확인 서약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당사양식 세목별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전 신청 시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103

중도인출, 자연이자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 한정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확인 서약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당사양식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금/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 전 신청시 잔금지급 후 신청시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요양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주1)}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1)}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단,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03

중도인출, 지연이자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파산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불가 	

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을 할 수 있는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령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여부 확인 있는 서류 	

|03

중도인출, 지연이자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확정급여형(DB) 제외)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제도	급여수준
확정급여형(DB)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확정기여형(DC)	사업주 부담금 + 운용손익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사업자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부담금 + 운용손익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text{ 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 \text{ 주}^2)}$$

* 주¹⁾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 주²⁾ 총 일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연간임금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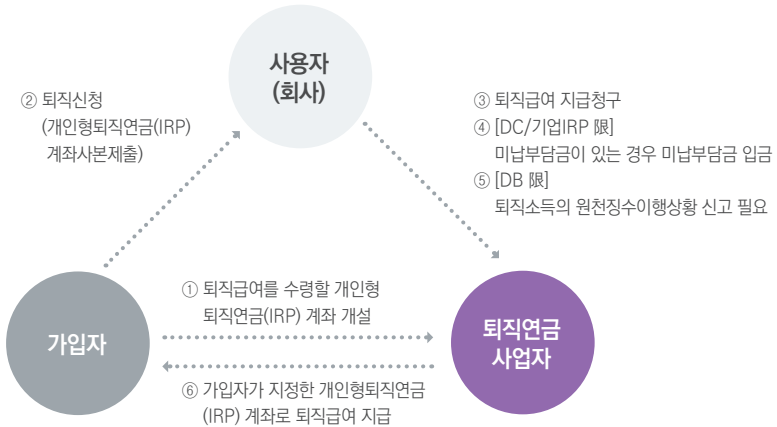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절차



1.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개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 이전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합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2. [퇴직의사 전달]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과 함께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3. [퇴직급여 지급청구]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당사 양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DB 限),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DC/기업형IRP, 임원 퇴직의 경우 限)

4. [(DC/기업IRP 限) 미납부담금 납입]

가입자(퇴직예정자)의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못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불입된 사업주부담금+운용손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과세이연 신고 및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5. [(DB 限) 퇴직소득세신고]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하므로, 사용자(회사)는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소득자 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확정급여형(DB)	사용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이연(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신고) •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6.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관련 세금을 차감후 지급합니다.

※ **당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가 당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 이전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매각 없이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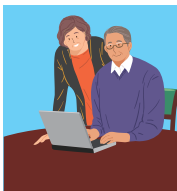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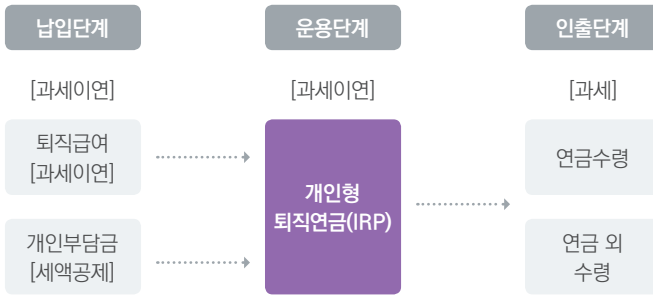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
-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이전
- 소득자라면 누구나 계좌 개설 가능 (연금저축 포함 연1,8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 납입 가능)
- 연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납입 · 운용시 세제혜택 >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퇴직소득과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 IRP통장을 개설하여 재직 중에는 추가부담금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군요!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만55세 이상 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조건의 미충족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시 가입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일시금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소득의 원천 / 수령형태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주1)} 이내)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주1)} 초과)
소득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주2)}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이연퇴직소득세
소득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연금소득세(종합과세) ^{주3)} • 70세 미만: 5.5% • 70세 ~ 80세미만: 4.4% •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손익		

※ 상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연금 수령}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text{한도}} \times 1.2$$

(11-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3) 소득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과세 신고시 연금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06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연금소득세 계산구조]

연금소득 (공적연금제외)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 40%
(-) 연금소득공제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산출세액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38%
	50,000만원 초과	40%

※ 지방소득세 별도

(-)기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세율
	70세미만	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
납부세액	80세 이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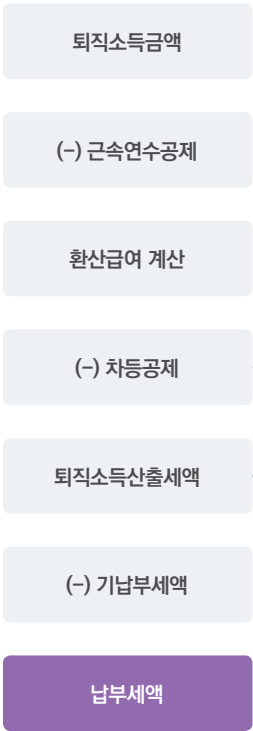
※ 지방소득세 별도

106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퇴직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 ~ 35%)로 전환되어 현재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16년 ~ 2019년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① 근속연수공제 : 종전과 동일
- ② 차등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를 적용

[연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연승]

-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 적용 후 금액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 후 **12로 나누고**, 근무년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경과규정]

- 2016년~ 2019년 까지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을 아래와 같이 혼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01.01~ 2016.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 × 20%
2017.01.01~ 2017.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 × 40%
2018.01.01~ 2018.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 × 60%
2019.01.01~ 2019.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 × 80%

106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참고: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2015년말까지 퇴직하는 경우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 ①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 ②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8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과세표준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은 오랜 근속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연분) 연평균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평균 퇴직소득세를 산출 후 근무년수를 곱하여(연승)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 단, 2013.01.01 이후 근무 분야에 대한 퇴직소득의 연평균과세표준 적용시 5배수로 환산 적용합니다.

(-) 기납부세액

1단계 : 연평균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 5/근속연수

2단계 : 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 세율)/5 × 근속연수

퇴직소득차감납부세액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38%
50,000만원 초과	40%

※ 지방소득세 별도

106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가입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 세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납입한도

- DC/기업형IRP/개인형IRP: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전금융권 합산 납입한도이며, 한도 설정 후 가입자 부담금 납입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연 700만원(연금저축 합산)
-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가입자부담금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 연금의 수령시 과세 구분

■ 개인형IRP

- 2012.7.26 이후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과세 (입금일자 기준)
- 그 이전에 납입한 퇴직금 원금 +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 과세

■ DC / 기업형IRP

- 2013.01.01이후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 가입자부담금의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과세 (입금일자 기준)
- 그 이전에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 가입자부담금의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 과세

107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제도의 폐지

-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
-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DB/DC) 폐지신고
-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제도의 중단

-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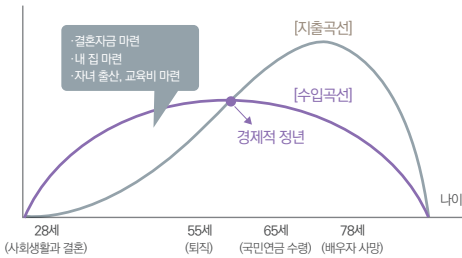


노후 설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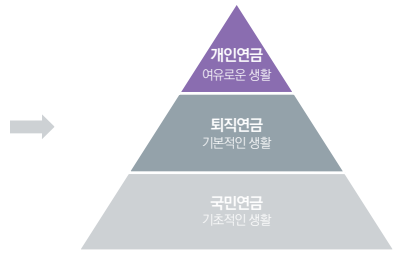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 이슈	결혼/주택마련 자금	교육투자 자금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상속 및 의료자금
자산관리 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자산관리 및 소비
안전자산 : 위험자산	30 : 70	30 : 70	50 : 50	65 : 35
대표적 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평균적 생애설계 시 고려사항



[라이프사이클과 수입/지출 관계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자금 산출방법

■ 노후자금 = 은퇴 직전 소득 X 소득대체율(60~80%) X 노후기간(20~30년)

|08

노후 설계의 중요성

노후자금 상세 설계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09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0

계약이전절차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 후 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요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중요한 투자원칙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재테크에 있어 투자 수단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한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아무리 좋다고 하는 투자수단이라고 하여도 한가지 수단에 올인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에 올인 하여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위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투자원칙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재테크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중요한 투자원칙 타이밍 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단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 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은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11

투자의 기본원칙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둘째,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셋째, 첫째와 둘째 운용방법을 제외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저위험 저수익	운용방법	상품종류	비고
↓ 고위험 고수익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적금 •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 •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분산요건을 갖춘 RP제외)에는 투자불가
	분산투자 등 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투자자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 	
	그 외 (위험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 •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 • 투자자격등급의 회사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금지증권은 운용불가 •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

| 11

투자의 기본원칙

운용방법 변경

만기도래, 투자성향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운용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운용 방법 변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변경: 기존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 투자비율 변경: 기존 보유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납입할 금액(부담금)에 대한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투자가능한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MEMO

Lined writing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6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E-mail : pension@yuantakorea.com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

